

2022년도 제5회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공고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할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목 포 교 도 소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 직종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임용예정 시기
공무원 근로자	조리원	1명	목포교도소 복지과	2022년 5월 중 (예정)

2. 담당예정 업무

- 급식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직원 급식 제공 등 급식관리
- 직원식당 위생 및 청결 관리
- 식자재 및 비품 관리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보수 수준

- 「2022년도 상용직 정원 및 보수 책정(안)」(법무부 교정기획과-366, 2022. 1. 4.)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기본급 : 월 1,857,107원(라급 2년 미만)
 -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초과근무 수당 : 월 기본 10시간 인정(시급 14,333원)
 - 휴일근무 수당 : 휴일근무 1일(8시간)로 계산
 - 명절휴가비 : 연 2회×500,000원(설, 추석 각 50만원)
 - 맞춤형복지 : 연 1회×500,000원

4. 근로 조건

- 신분 : 공무원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무기계약(정년 60세)
- 근무시간 : 1일 8시간(순환근무)
 - 1조 : 06:00 ~ 15:00
 - 2조 : 08:00 ~ 17:00
 - 3조 : 09:00 ~ 18:00
 - ※ 토,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2인 근무(06:00~18:00)
 - ※ 출·퇴근시간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목포교도소 총무과에 문의(061-288-7104)
- 근무 장소 : 목포교도소 구내 직원식당
- 최종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5. 근거 법령

- 법률 제18176호(2021.11.19.) 「근로기준법」
- 법무부훈령 제1402호(2022.01.18.)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6. 응시 자격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학력·경력 제한 없음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건강진단)
- 06시 조기출근 및 토·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순환 근무)

7. 우대 사항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직무관련 자격증(상위자격 1개만 등급별 차등 배점, 최대 20점)

점 수	직무관련 자격증
20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10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식품가공기능사

□ 취업지원 대상자·저소득층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제1항 제1호 해당자 : 만점의 10%, 제1항 제2호 해당자 : 만점의 5%
 - 단, 동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8. 시험 방법

가. 서류 전형

-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평정 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등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비고						
일반 전형요소	자기소개서 평가(배점 : 40점) - 지원동기 등 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충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배점 : 40점) - 해당 업무의 적합성, 업무이해도, 업무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전문분야 전형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지 자격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점수</td> </tr> <tr> <td>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식품가공기능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able>	소지 자격증	점수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20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식품가공기능사	10	자격증별 차등우대
	소지 자격증	점수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20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식품가공기능사	10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아래 참조							
저소득층 가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 없이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제출한 경우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구분	가 산 비 율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나.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정요소 항목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 후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각 평정요소 항목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각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1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 시험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9.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 공고	2022. 4. 12.(화) ~ 2022. 4. 18.(월)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22. 4. 19.(화) ~ 2022. 4. 21.(목)	◦ 목포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4. 27.(수)	◦ 서류합격자, 면접일정은 개별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22. 5. 3.(화)	◦ 목포교도소 청사 2층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2022. 5. 4.(수)	◦ 개별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0.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목포교도소 총무과

나. 접수 기간

- 2022. 4. 19.(화) ~ 2022. 2. 21.(목) 09:00 ~ 12:00 / 13: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할 수 없음

다. 접수처

- 목포교도소 총무과

- (58574)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 061)288-7104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일반우편,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회송
 -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증' 기재

11.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 제출서류 총괄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 응시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목포교도소 방문 후 작성 및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근로자 인사관리카드용 사진 2매

12. 기타 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자격 및 경력 등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만 인정되며, 자격증·면허증은 국내 자격증에 한합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에 출입이 금지되며, 면접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용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교도소 총무과(061-288-7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응시자격요건
	. . .	목포교도소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필수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② 응시원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해당자	⑧ 주민등록초본(남성만/병역관련 사항기재 발급) 각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⑨ 우대사항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⑩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⑪ 저소득층 대상자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⑫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계사용 고정 제출
 (스테플러 사용 절대 금지)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자로 기재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 여부를 체크(√)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응시할 수 없음)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기관 : 목포교도소
- ③ 성명을 기재

나. 경력사항

- ① 조리 관련 근무경력 기재(참고사항으로만 활용 예정)

다. 우대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① 자격증 : 직무관련자격 취득사항 등을 기재
※ 기재사항은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 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 ② 취업지원 대상자·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우대사항 기재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기관 : 목포교도소

응시직렬(직급) :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성 명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

②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③ 자필 작성 가능

(별지서식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기관 : 목포교도소

응시직렬(직급) :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성 명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 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
- ②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 ③ 자필 작성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무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등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결격사유 유무조회 범죄전력 조회 자료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별지서식 제8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목포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